

## 다. 공사방법 임의변경(지적사항 없음)

## 라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부적정 (4건 55,310천원)

환수 1건 26,400천원, 감액 3건 28,910천원

- 「산업안전보건관리비」 정산 부적정
- 「보험료(건강,연금,노인장기요양)」 정산 부적정

### (1) 「산업안전보건관리비」 정산 부적정

(26,400천원 상당 환수, 640천원 상당 감액)

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『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』 제7조 제②항 규정에 따르면 【별표 2】 ‘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.’고 되어 있으며, 또한 동 기준 제8조 규정에 ‘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해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’고 규정되어 있는데도,

- 『종로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공사』 등 2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이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,
-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 제7조(사용기준) 【별표 2】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**사용 불가 내역으로 규정된 작업자 방한복 등을 임의반영 하였으며, 교통신호수 인건비 수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에도, 정산시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었음.**
- 이로 인해, 「산업안전보건관리비」 정산 부적정으로 공사비 27,04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

연번	공사명	계약금액	공사기간	계약자	지적사항
2건					공사비 27,040천원 상당 환수 및 감액
1	종로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	2,200백만원 → 10,900천원	2017.08.29. ~ 2018.08.15	천마산건설(주)외 1 대표 안치연	공사비 26,400천원 상당 과다 지급
2	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 선 설비공사	2,757,000천원 →2,710,518천원	2016.09.02. ~2020.01.18	미강기업(주) 외1 대표 이한수	공사비 640천원 상당 과다 지급

## (2) 「보험료(건강, 연금, 노인장기요양)」 정산 부적정 (28,270천원 감액)

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』 제8절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 정산은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(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,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)로 정산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도,

- 『시립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』 등 2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「보험료(건강, 연금, 노인장기요양) 납입 확인서」 등을 확인한 결과,
- 최종 설계변경 시 「보험료(건강, 연금, 노인장기요양)」의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현장대리인 등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하여 부적정하게 정산하였음
- 이로 인해, 「보험료(건강, 연금, 노인장기요양)」 정산 부적정으로 공사비 28,27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

연번	공사명	계약금액	공사기간	계약자	지적사항
2건					공사비 28,270원 상당 감액
1	시립노원 청소년 직업 체험 센터 신축공사	3,340,704천원 →3,552,299천원	2017.11.17. ~ 2019.03.16	(주)디에스종합건설 대표 이상원	공사비 8,330천원 상당 감액
2	스페이스살림조성공사	17,209,000천원 →17,862,238천원	2017.12.26. ~ 2020.06.25	호반건설(주) 대표 전중규	공사비 19,940천원 상당 감액